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2018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재강조 알림

1. 소방행정과-1225(2018.1.29.)호 『2018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실시 계획(알림)』
2. 위와관련, 기 안내된 「2018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」 중 아래 사항을 재강조 하여 알려드리오니, 전 부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재강조 사항

○ 신규직원 휴가 보장제 실시

- 신규임용 **2년 이내**, 특휴 포함 최소 **연 5일 이상 휴가 실시**
- 연 1회(10월 중) 신규임용자에 대한 휴가 현황 점검 실시(점검관 : 행정과장)

○ 장기재직휴가 운영 변경

-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 시 최소 5일 단위로 분할 실시 가능
※ (붙임2참조) 단, 교대근무자 사용 시 분할 단위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
- 모든 제한사항 폐지(부서현원, 19년차 사용 후 3년 내 사용 제한 등)
- 월별 현황관리(행정팀 월보) 실시

○ 육아 관련 휴가, 휴직 등 실시 (법령 개정사항 포함)

- 육아휴직의 재직기간 산입 확대 : 셋째부터 ⇒ **둘째 자녀부터 전기간**
- 자녀입영휴가(1일), 자녀돌봄휴가(2일) 시행 ⇒ 공무원 1인당 휴가일자 부여
- 육아시간(남성공무원 사용 가능) 및 모성보호시간(임신공무원)
⇒ 부서장은 소속공무원 중 대상이 있는 경우, **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함** (2018년도 소방공무원 휴가등 업무지침 P29.)

3. 행정사항

가. 부서장은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재강조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,

나. 특히, 육아 관련 모든 특별휴가(육아시간, 모성보호시간 등)에 대해 소속 직원 중 대상자가 있는 경우 **적극적으로 보장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육아시간, 모성보호시간 관련 문의 : 복무담당(김재현 ☎314)

